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5. 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4월 18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1년 4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최병찬)

가. 개정사유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2000. 1. 12)·시행(2000. 7. 1)되고 있어 대마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별표] 위임사무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 나. 대마취급자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다. 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 라. 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
- 마.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분에 대한 승인
- 바. 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
- 사. 출입·검사와 수거
- 아. 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차. 청문의 실시
-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타. 마약류 감시원 임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환)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현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3개의 개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마약류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1개로 통합 관리하고자 2000년 1월 12일 제정, 2000년 7월 1일 시행하여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보건소장 소관업무인 마약류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가”목은 변동이 없으며, “나”목의 “대마취급자 허가증(제)교부”를 “대마취급자 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으로, “다”목 “대마 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를 “바”목에 “대마 재배자의 보고 접수”로, “라”목의 “대마의 폐기 등”을 “아”목에 “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으로, “마”목의 “대마의 사고 보고”를 “라”목에 “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로, “바”목의 “대마취급자의 업무 폐지 등 신고”를 “다 ”목에 “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로, “사”목의 “대마취급자격상실자 등의 대마처리”를 “마”목에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분에 대한 승인”으로, “아”목의 “검사와 수거”를 “사”목에 “출입·검사와 수거”로 하며, “자”목의 “허가취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나. 대마취급자허가증 (제)교부 다.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 라. 대마의 폐기 등 마. 대마의 사고 보고 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등 신고 사. 대마취급자격 상실자 등의 대마처리 아. 검사와 수거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대마감시원 타. 물수대마의 폐기	대마관리법 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4조의2 동법 제15조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보건소장	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나. 대마취급자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 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 마. 대마취급자격 상실자의 대마처분에 대한 승인 바. 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 사. 출입·검사와 수거 아. 대마의 폐기 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명령 차. 청문의 실시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제43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제48조	보건소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 (별표) 위임사무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나. 대마취급자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 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 마.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분에 대한 승인 바. 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 사. 출입·검사와 수거 아. 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차. 청문의 실시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제43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제48조	보건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및 업무정지 등”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명령”으로 “차”목의 “청문”을 “청문의 실시”로 하며, “카”목의 “대마감시원”을 “타”목에 “마약류감시원 임명”으로 변경하고, “타”목의 “몰수대마의 폐기”는 삭제하고, “카”목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사항으로 그동안 우리구 문래동의 납부지검 소재시 몰수대마의 폐기 외에는 본 조례와 관련된 민원처리업무는 없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	-----

제출년월일 : 2001. 4. 17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2000. 1. 12)·시행(2000. 7. 1)되고 있어 대마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별표] 위임사무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 나. 대마취급자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다. 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 라. 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
- 마.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분에 대한 승인
- 바. 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
- 사. 출입·검사와 수거
- 아. 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차. 청문의 실시
-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타. 마약류 감시원 임명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 내지 13조, 제36조, 제41조 내지 제46조, 제48조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조례(안) : 별첨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